(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고시

[시행 2026. 6. 30.] [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6-1호, 2026. 6. 30., 일부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지정·고시하니, 아래 수역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6. 6. 30.

인천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1	인천항	인 천	개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6.0초, 동경126도27분09.0초 2. 북위37도21분07.0초, 동경126도30분45.0초 3. 북위37도21분37.5초, 동경126도31분10.7초 4.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3분40.0초 5.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4분08.0초 6. 북위37도21분19.4초, 동경126도31분45.4초 7. 북위37도20분36.2초, 동경126도31분09.8초 8. 북위37도20분04.0초, 동경126도28분23.2초 9. 북위37도19분44.0초, 동경126도28분08.0초
2	인천항	인 천 서해구 및 영종구, 제물포구	개항	1. 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 180도, 아암도 중심에서 270도로 그은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가. 북위37도30분24.0초, 동경126도34분16.0초 나. 북위37도31분18.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다. 북위37도32분30.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라. 북위37도33분18.0초, 동경126도34분12.0초 마. 북위37도33분44.56초, 동경126도35분24.9초 바. 북위37도33분54.46초, 동경126도37분01.05초 사. 북위37도33분46.0초, 동경126도37분16.0초 아. 북위37도33분43.0초, 동경126도37분17.0초

	경인항	김 포		자. 북위37도33분00.0초, 동경126도36분19.0초 다만,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한다. 가. 북위37도33분33.1초, 동경126도36분03초 나. 북위37도33분30.0초, 동경126도35분53.5초 다. 북위37도33분24.4초, 동경126도36분10초 라. 북위37도33분26.25초, 동경126도36분10.95초 마. 북위37도33분28.45초, 동경126도36분11.0초 바. 북위37도33분33.55초, 동경126도36분18.10초 사. 북위37도33분36.75초, 동경126도36분16.5초 아. 북위37도33분33.30초, 동경126도36분05.5초 3. 아래 가호와 나호 지점을 연결한 선과 다호와 라호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내측수면 가. 북위37도35분32.50초, 동경126도47분02.47초 나. 북위37도35분34.92초, 동경126도46분58.40초 다. 북위37도35분59.87초, 동경126도47분59.52초 라. 북위37도35분59.21초, 동경126도47분59.87초
3	LNG 기지	인 천 연수구	개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5분48.0초 3. 북위37도20분02.1초, 동경126도33분41.5초 4. 북위37도19분42.1초, 동경126도28분27.5초 5. 북위37도19분31.0초, 동경126도28분18.0초 6. 북위37도19분05.0초, 동경126도28분42.0초 7. 북위37도19분18.1초, 동경126도29분25.6초 8. 북위37도19분35.1초, 동경126도33분43.5초 9. 북위37도19분39.1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문의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2-650-2249)

3.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폐지)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2023-1호는 폐지한다.

[별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 인천항만 및 LNG기지 출입항로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1	인천항	인 천	개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6.0초, 동경126도27분09.0초 2. 북위37도21분07.0초, 동경126도30분45.0초 3. 북위37도21분37.5초, 동경126도31분10.7초 4.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3분40.0초 5.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4분08.0초 6. 북위37도21분19.4초, 동경126도31분45.4초 7. 북위37도20분36.2초, 동경126도31분09.8초 8. 북위37도20분04.0초, 동경126도28분23.2초 9. 북위37도19분44.0초, 동경126도28분08.0초
2	인천항 경인항	인 천 서해구 및 영종구, 제물포 구	개항	1. 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 180도, 아암도 중심에서 270도로 그은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가. 북위37도30분24.0초, 동경126도34분16.0초 나. 북위37도31분18.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다. 북위37도32분30.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라. 북위37도33분18.0초, 동경126도34분12.0초 마. 북위37도33분44.56초, 동경126도35분24.9초 바. 북위37도33분54.46초, 동경126도37분01.05초 사. 북위37도33분46.0초, 동경126도37분16.0초 아. 북위37도33분43.0초, 동경126도37분17.0초 자. 북위37도33분00.0초, 동경126도36분19.0초
3	LNG 기지	인 천 연수구	개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5분48.0초 3. 북위37도20분02.1초, 동경126도33분41.5초 4. 북위37도19분42.1초, 동경126도28분27.5초 5. 북위37도19분31.0초, 동경126도28분18.0초 6. 북위37도19분05.0초, 동경126도28분42.0초 7. 북위37도19분18.1초, 동경126도29분25.6초 8. 북위37도19분35.1초, 동경126도33분43.5초 9. 북위37도19분39.1초, 동경126도37분13.5초

□ 경인항 인천터미널(서해갑문 ~ 청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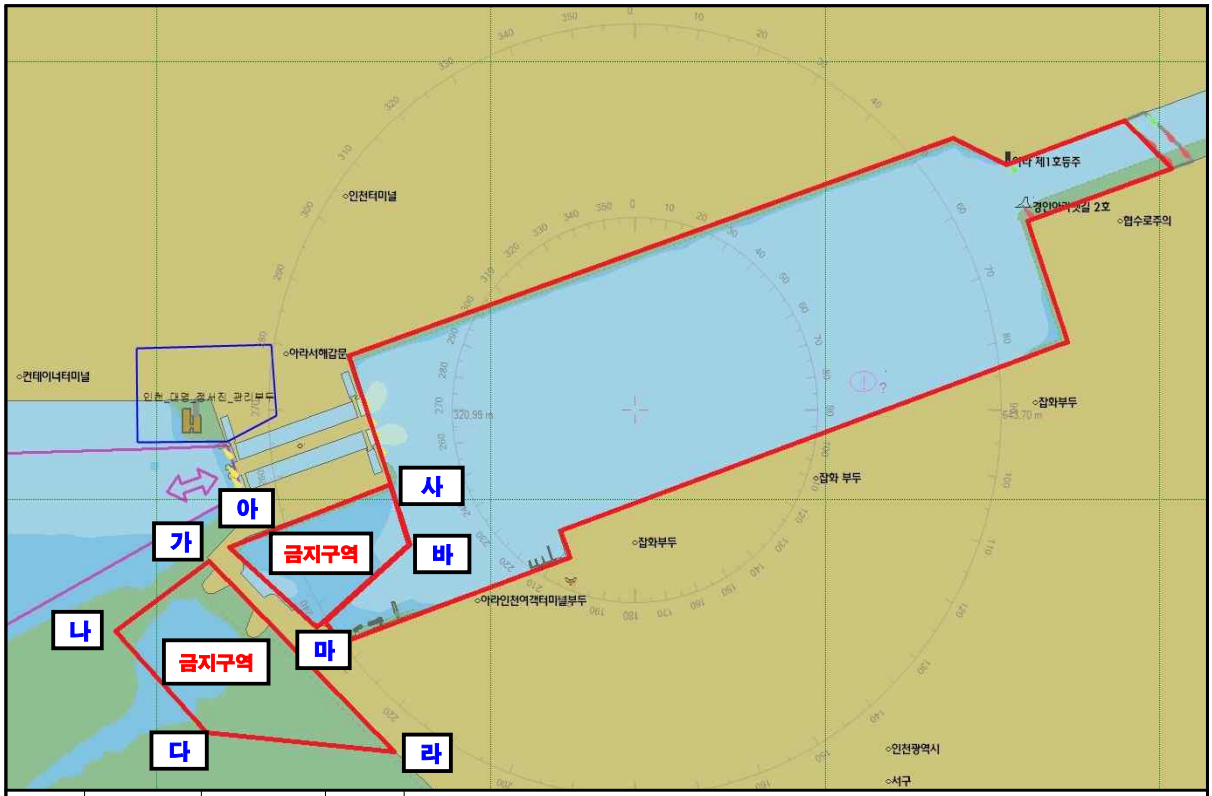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2	인천항 경인항	인 천 서해구 및 영종구, 제물포구	개항	다만,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수역은 해양레저활동을 금지한다. 가. 북위37도33분33.1초, 동경126도36분03초 나. 북위37도33분30.0초, 동경126도35분53.5초 다. 북위37도33분24.4초, 동경126도36분10초 라. 북위37도33분26.25초, 동경126도36분10.95초 마. 북위37도33분28.45초, 동경126도36분11.0초 바. 북위37도33분33.55초, 동경126도36분18.10초 사. 북위37도33분36.75초, 동경126도36분16.5초 아. 북위37도33분33.30초, 동경126도36분05.5초

□ 경인항 김포터미널(한강갑문 ~ 아라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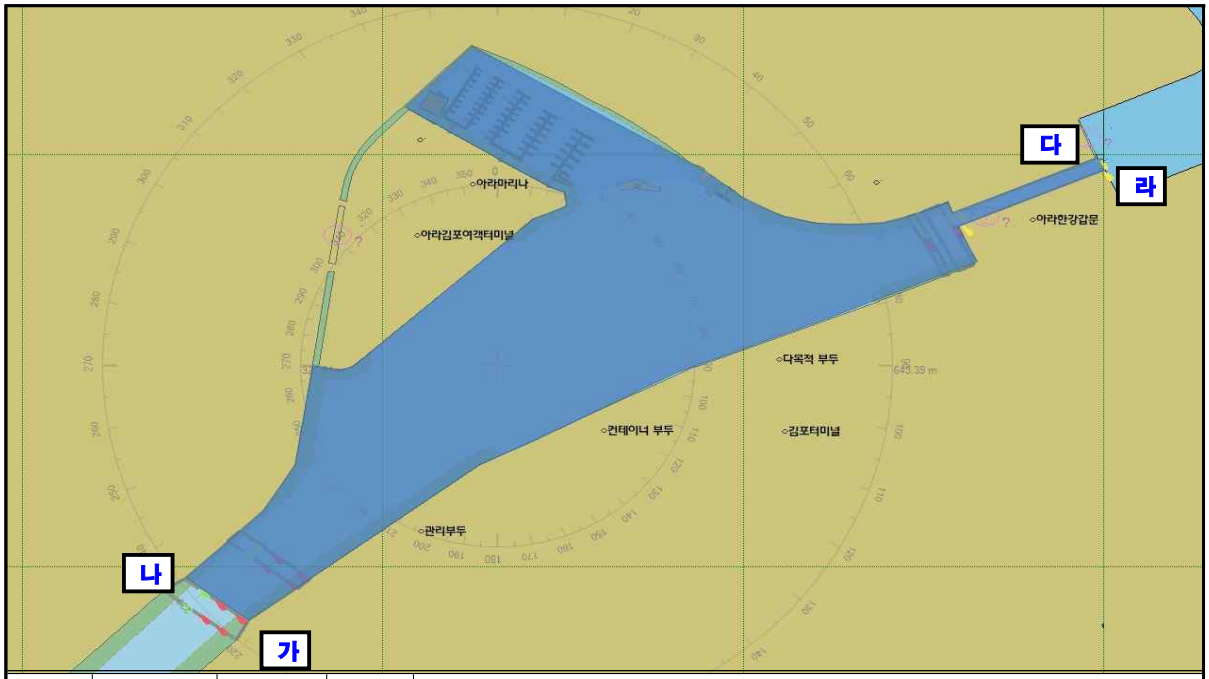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2	경인항	김 포	개항	3. 아래 가호와 나호 지점을 연결한 선과 다호와 라호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내측수면 가. 북위37도35분32.50초, 동경126도47분02.47초 나. 북위37도35분34.92초, 동경126도46분58.40초 다. 북위37도35분59.87초, 동경126도47분59.52초 라. 북위37도35분59.21초, 동경126도47분59.87초